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2254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4년 10월 16일
- 회 부 일 : 2024년 10월 18일

2. 제안이유

- 별표 서식에 규정된 표창 양식과 실제 활용 중인 양식 간 차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표창 디자인의 자율성 및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표창 양식에 표창의 종류, 대상자, 표창권자 등의 내용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디자인 규정은 삭제함(안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나. 기타 자구를 수정하고 위원회 조항을 정비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9조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4. 8. 22.~9. 11.)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검토 의견

가. 조례 개정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은 표창 양식에 표창의 종류, 대상자, 표창권자 등의 기본적인 내용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디자인 규정은 삭제 하며(안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위원회 조항 정비(안 제13조~제14조) 및 기타 자구를 수정하려는(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제12조, 제17조의2) 것임.
-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이며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음.

[표창 분류]

| 구 분 | 수여 대상 | 수여 사유 |
|-----|--|--|
| 표창장 | ①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 등)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함 |
| | ② 자치구 및 소속기관 | 우수한 시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 |
| | ③ 개인 및 단체 |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현저히 기여함 |
| | ④ 퇴직자(공무원, 투출기관 직원 등) ※ 정년·명예퇴직·순직 등 |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 |
| 상장 |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교육훈련성적 등 우수한 평가성적 |
| |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
| 감사장 | 개인 및 단체 |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공적 |
| | |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 추진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현저히 기여한 공적 |

[최근 5년간 시장표창 수여내역(소방 포함)]

(작성기준 : 2024.09.30.)



| 연도 | 합계 | | | 공무원 표창 | | | 시민 표창 | | |
|---------|-------------|------------|-------------|-------------|------------|-------------|-------------|------------|-------------|
| | 표창장 (소방) | 상장 (소방) | 감사장 (소방) | 표창장 (소방) | 상장 (소방) | 감사장 (소방) | 표창장 (소방) | 상장 (소방) | 감사장 (소방) |
| 합 계 | 42,838 | 14,987 | 510 | 23,386 | 2,030 | 81 | 19,452 | 12,957 | 429 |
| | 2,414 | 645 | 0 | 1,692 | 193 | 0 | 722 | 452 | 0 |
| 2020 | 11,024 | 2,628 | 97 | 6,602 | 613 | 13 | 4,422 | 2,015 | 84 |
| | 576 | 104 | 0 | 407 | 33 | 0 | 169 | 71 | 0 |
| 2021 | 9,468 | 2,477 | 72 | 5,359 | 438 | 12 | 4,109 | 2,039 | 60 |
| | 493 | 81 | 0 | 338 | 31 | 0 | 155 | 50 | 0 |
| 2022 | 9,162 | 3,942 | 123 | 4,709 | 375 | 23 | 4,453 | 3,567 | 100 |
| | 511 | 154 | 0 | 402 | 53 | 0 | 109 | 101 | 0 |
| 2023 | 9,603 | 3,928 | 111 | 5,080 | 379 | 30 | 4,523 | 3,549 | 81 |
| | 628 | 210 | 0 | 460 | 54 | 0 | 168 | 156 | 0 |
| 2024.9. | 3,581 | 2,012 | 107 | 1,636 | 225 | 3 | 1,945 | 1,787 | 104 |
| | 206 | 96 | 0 | 85 | 22 | 0 | 121 | 74 | 0 |

- 표창 디자인 변경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디자인의 세부 사항을 삭제하여 표창 양식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조항 및 기타 자구 정비를 통해 조례의 적용 및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여,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행정국은 시정기조와 상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 규정이 아닌 내부 방침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바,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으나, 표창 디자인이 자의적으로 운용될 가능성 및 잦은 디자인 변경으로 표창 가치를 떨어뜨릴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에서 심벌 등의 상징물은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제4조) 조례로써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표창의 세부 디자인을 시장 방침이 아닌 조례 제·개정을 통해 관리하여 공적 권위를 증진시키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은 아닌지에 대해 심도있는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세부 내용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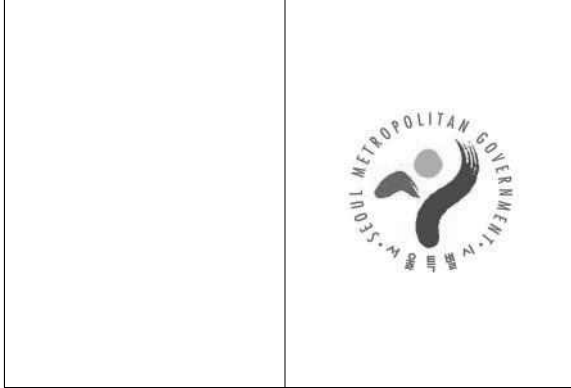
1) 표창 양식 유연성 제고(안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안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은 표창 양식의 기본적인 사항(종류, 대상자, 표창권자 등)만을 규정하여 표창 디자인의 자율성 및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창장,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장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감사장을 수여한다.</p> <p>[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p> <p style="text-align: center;">〈표 지〉</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width: 45%; height: 150px; border: 1px solid black;"></div> <div style="width: 45%; text-align: center;">  </div> </div> <p>※ 바탕 : 진감색, 시휘장 : 금박</p> <p style="text-align: center;">〈내 지〉</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width: 45%; height: 150px; border: 1px solid black;"></div> <div style="width: 45%; text-align: center;">  </div> </div> <p>※바탕 : 연주황, 시건물 : 금박, 시휘장 및 리본 : 금박 글씨 : 검정색, 테두리줄 : 주황색</p> | <p>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 별지 제2호서식의 상장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장을 수여한다.</p> <p>[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제 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표 창 장</p> <p style="text-align: center;">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 ○○○</p> </div> |

[별지 제2호서식] 상장

〈표 지〉



※ 바탕 : 진감색, 시휘장 : 금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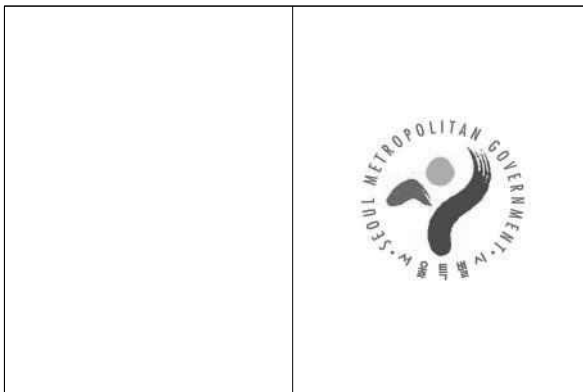
〈내 지〉



※바탕 : 연주황, 시건물 : 금박, 시휘장 및 리본 : 금박
글씨 : 검정색, 테두리줄 : 주황색

[별지 제3호서식] 감사장

〈표 지〉




※ 바탕 : 진감색, 시휘장 : 금박

[별지 제2호서식] 상장

| |
|--|
| <p>제 호</p> <p>상 장</p> <p>성명</p> <p>년 월 일</p> <p>서울특별시장 ○○○</p> |
|--|

[별지 제3호서식] 감사장

| |
|--|
| <p>제 호</p> <p>감 사 장</p> <p>성명</p> <p>년 월 일</p> <p>서울특별시장 ○○○</p> |
|--|

| 〈내 지〉 | |
|--|---|
| |  |
| ※바탕 : 연주황, 시건물 : 금박, 시휘장 및 리본 : 금박 글씨 : 검정색, 테두리줄 : 주황색 | |

- 다만, 행정국은 세부 디자인을 포함한 구체적인 표창 양식은 시장방침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디자인이나 양식을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조문이 누락되어 있어, 조례에 “표창 서식의 세부 양식은 시장이 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현행 양식과 디자인을 별지로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2) 공적심의회 관련 조항 정비(안 제13조~제14조)

-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시장 소속 제1공적심의회와 제2공적심의회를 별도 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자구를 수정하는 등 공적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현 | 행 | 개 | 정 |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조(시 공적심의회) ① | 시 | 본 | 청 | 에 | 표 | 창 | 대 | 상 | 자 | 의 | 공 | 적 | 을 | 심 | 의 | 하 | 기 | 위 | 하 | 여 | 다 | 음 | 의 | 공 | 적 | 심 | 의 | 회 | 를 | |
| 제13조(시 공적심의회) ① | 표 | 창 | 대 | 상 | 자 | 의 | 공 | 적 | 을 | 심 | 의 | 하 | 기 | 위 | 하 | 여 | 시 | 장 | 소 | 속 | 으 | 로 | 제 | 1 | 공 | 적 | 심 | 의 | 회 | 와 |

둔다.

1. 국무총리 표창이상 훈격의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공적심의회를 두고, 제1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2. 시장표창 대상 및 장관급 상당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공적심의회를 두고, 제2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 4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신 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공적심의회(이하 “공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삭 제>

<삭 제>

② 제1공적심의회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 훈격(공훈에 따른 훈장, 포장 등의 등급을 말한다)의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한다.

⑥ 공적심의회 의 위원장이 ---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① 시 소속기관장의 표창 수여를 위한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별로 공

----- 미리 지명한 -----
-----.

③ 제1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맡고, 위원은 시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제2공적심의회는 시장 또는 장관급 상당의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한다.

⑤ 제2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맡고, 위원은 시 4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⑦ 공적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시 소속기관 공적심의회) ① --- 소속기관의 장-----

| | |
|--|---|
| <p>적심의회를 둔다.</p> <p>② 제1항의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u>표창권자가</u> 임명한다.</p> | <p>-----.</p> <p>② ----- <u>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u> ----- ----- -- <u>시 소속기관의 장이</u> ----- -----.</p> |
|--|---|

[공적심의회 개정 전·후 비교]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제1공적심의회 |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 |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 |
| 제2공적심의회 |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 | 동조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 |
| 직무대행 | 제13조제2항에 규정 | 동조 제6항에 규정 |
| 개의 및 의결 정족수 | 제13조제3항에 규정 | 동조 제7항에 규정 |

[공적심의회 운영개요]

| 구 분 | 제1공적심의회 | 제2공적심의회 |
|--------|--|---------------------|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행정국장 |
| 위 원 | 3급 이상 17명, 민간위원 8명 | 4급 50명 |
| 심의대상 |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훈격 ※ 정부포상, 모범·우수공무원 등 선발 | 시장표창 및 장관급 상당 |
| 위원회 구성 | <u>위원장 포함 6인 이상 11인 이내</u> ※ 5분의 3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10인 이내 |
| 운영방법 | 임명된 위원 중에서 심의회 개최 시마다 위원장이 지명 | |

- 다만, 상위법인 「상훈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정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위원장 1명 포함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공적심의회는 실제 구성·운영도 이에 따르고 있는 바,
- 본 개정안의 국무총리표창 이상 훈격의 정부포상을 심의하는 제1공적심의회는 구성 인원(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0명 이하)을 상위법의 구성요건과 동일하게(위원장 포함 6명 이상 11명 이하)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상훈법 시행령」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생략)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훈 추천권자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서훈 추천권자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되, 국가안전보장이나 직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위촉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서훈 추천권자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 ⑥ (생략)

3) 기타 자구표현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제12조, 제17조의2)

-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제12조 및 제17조의2는 조례의 자구 표현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안 제1조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 “서울특별시”

- ※ 안 제2조 : “적용범위”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 ※ 안 제4조 : “한한다” → “한한다. 이하 같다”
- ※ 안 제7조 : “직무에 특히 성실” → “직무를 성실히 수행”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제13조에 따른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공무원등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 ※ 안 제8조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공무원 등과” → “공무원등.”
- ※ 안 제10조 :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 별지 제2호√서식의 상장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 별지 제2호서식의 상장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범위안” → “범위”
- ※ 안 제11조 :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얻은 후 추천한다” → “미리 받아야 한다”
- ※ 안 제12조 : “표창시 해당” → “표창 시 제13조에 따른”
“상장의” → “상장을 수여하는”
“감사부서로 하여금” → “감사부서에”
- ※ 안 제17조의2 : “제1항의 기록부에는 제17조에 따른 표창수여 사실 확인서 교부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7조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기록부에 그 사실을 작성하여야 한다”

○ 조례의 용어·문장·체계 등을 정비하는 것은 조례의 규정 내용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 | | |
|------|-------|-------|-------|
| 전문위원 | 정 찬 일 | 입법조사관 | 이 태 기 |
|------|-------|-------|-------|